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2008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정민, 백태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종운

변 론 종 결 2020. 4. 16.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수영구 D 임야 104,7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418,808분의

17,303.6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2. 6. 25. 접수 제3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원고 B, 원고 C 및 F은 망인의 손자들이다.

나. 원고들 및 F은 1988. 6. 20. E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G 임야 2,479㎡, H 임야 56,530㎡와 D 임야 123,769㎡를 증여받았다. 위 D 임야는 1989. 7. 20. 분할로 121,402㎡가 되었고, 1990. 5. 4. 분할로 121,002㎡(이하 위 D 임야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다. 망인은 1991. 2. 18.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1991. 8. 16.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세 총 세액 8,419,120,472원 중 6,991,86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는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동래세무서장은 망인이 사망한 1991. 2. 18.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근거하여 합계 8,308,127,049원의 추정세액을 부과하고, 1992. 6. 1.

물납허가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2. 6. 12. 이 사건 임야와 I 임야 14,556㎡, J 임야 293㎡, K 임야 854㎡, L 임야 597㎡로 분할되었고, 1992.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2. 6. 1.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1990. 8. 30.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8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부동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실체적 근거가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1)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에 따르면 원고들과 F은 8,376,160,000원(= 104,702㎡ × 공시지가 80,000원) 중 6,991,868,000원에 대하여 물납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991,868,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87,398.35/104,702 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나머지 17,303.65/104,702 지분(= 1 - 87,398.35/104,702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물납이란 금전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금전납부에 갈음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부동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래세무서장은 1992. 6. 1. 원고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121,002㎡ 중 104,702㎡를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 6,991,868,000원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물납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2. 6. 12. 이 사건 임야와 I 임야 14,556㎡, J 임야 293㎡, K 임야 854㎡, L 임야 597㎡로 분할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2. 6. 1.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경

1) 원고들은 이 사건 물납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환급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함.